



## 인도네시아 Tax Alert 2021 년 9 월호

### 에너지, 자원 및 산업 (ER&I)

#### 석유 및 가스 블록 참여지분 이전에 관한 신규 규정 발행

원가 회수 계약에 따른 업스트림 석유 및 가스 생산물분배계약(PSCs)에 대한 인니의 과세는 2017 년 정부령 (GR) 번호 27 로 개정된 2010 년 정부령 번호 79 에 의해 규제된다. Gross-split 계약에 따른 PSC 의 과세는 2017 년 GR 번호 53 에 의해 규제된다.

PSC 에 대한 참여 지분(PI)의 이전과 관련된 과세는 PP-79 와 PP-53 및 재무부 장관 (MoF) 규정 번호 257/PMK.011/2011(PMK-257)를 통해 시행하고 있으며 인니정부는 2021 년 8 월 31 일에 PP-79 및 PP-53 의 관련 PI 이전 조항을 대체하는 2021 년 GR 번호 93 (PP-93)을 공표했다. PP-93 공표의 목적은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고 업스트림 부문에 유리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며 국영 석유 및 가스 회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PP-93 은 PSC 의 PI 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될 수 있는 부동산임을 명확히 한다. PI 의 이전은 PSC 계약자에게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어 최종분리과세 소득세가 부과된다. PP-93 은 해당 이전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세된다. 다음은 PP-93 의 주요 조항 요약임:

조항	직접적인 이전	간접적인 이전
이전에 대한 설명 (PP-93 은 간접 이전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함)	계약자는 PSC 블록에 있는 자신의 PI 를 다른 당사자에게 이전한다.	PSC 블록의 PI 는 소유권 수준에 관계없이 PI 를 소유한 계약자의 지분 또는 계약자의 직간접적 소유자의 지분을 매각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이전된다.
최종분리과세 소득세율 (PP-79/PP-53 에서 PP-93 변경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사 단계에서 이전이 수행되는 경우 5%, 또는</li> <li>• 개발 단계에서 이전이 수행되는 경우 7%.</li> </ul>	
과세 기준 (PP-93 은 간접 PI 이전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목과 형식에 관계없이 실제 이전 가격; 또는</li> <li>• 정상가격 (특수관계자 이전의 경우).</li> </ul>	PSC 의 공정가액 (주식 비율 및 이전되는 PI 비율 고려됨).
세금 납부 기한 (PP-93 은 간접 PI 이전에 대한 세금 납부 기한을 수정함)	아래 중 가장 빠른 시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I 지불</li> <li>• PI 의 이전 시점; 또는</li> <li>• PI 의 이전이 에너지광물자원부의 승인을 받은 시점</li> </ul>	PI 이전 발생 회계년도 말
최종분리과세 소득세 면제 대상 PI 이전 조건 (PP-93 은 간접 PI 이전에 대한 새로운 면세를 도입함)	탐사 단계에서 PI 의 직접 이전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면세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자는 전체 PI 를 상대방에게 이전하지 않음;</li> <li>• 계약자가 3 년 이상 PI 를 소유;</li> <li>• 탐사 활동이 수행되었음; 또한</li> <li>• 이전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li> </ul> 개발 단계에서 PSC 계약 또는 관련 법률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수행되는 PI 의 직접 이전은 면세될 수 있다.	탐사 및 개발 단계에서 PI 의 간접 이전은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면세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주식 이전으로 인한 수익은 기존의 일반 소득세법에 따라 이미 소득세의 대상이 되었음;</li> <li>(b) 해당 이전은 이미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최종분리과세 소득세의 대상이 됨;</li> <li>(c) 이전이 구조조정 일부로 수행되며 이 경우 국세청(DGT)으로부터 비과세 구조조정 승인을 받음; 및/또는</li> <li>(d) 이전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최상위 지배회사는 변동 없음.</li> </ul> PP-93 은 상기 각 항의 예시를 제공함.
		위의 (d)항에 해당하는 이전과 관련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은 회계연도 종료 후 4 개월내 DGT 에 통보되어야 함;</li> <li>• DGT 에 대한 통지는 거래 문서, 감사 재무제표, 구조 조정 승인 등과 같은 특정 증빙 문서가 첨부되어야 함; 또한</li> <li>• DGT 는 이전의 수익 창출여부, 최상위 지배회사변경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계약자를 감사할 권한이 있음.</li> </ul>

PP-93 에 대한 몇 가지 높은 수준의 관찰은 다음과 같다:

- PP-93 발행에 따라 PP-79 및 PP-53 의 PI 이전에 관한 조항은 폐지된다. 재무부장관령은 PP-93 에 대한 시행령으로 발행된다;
- 2011 년에 재무부장관은 PP-79 에 대한 시행령 으로 PMK-257 을 공표했다. PMK-257 (PP-79 에 참조)에 따라 PI 이전에 대한 최종분리과세후 이익은 소득세 제 26 조 4 항(지점이윤세(BPT))의 적용을 받는다. 2017 년에 PP-79 가 개정되면서 BPT 에 대한 요구 사항이 제거되었지만 PMK-257 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PP-93 에는 PP-93 과 모순되지 않는 한 PI 이전과 관련된 PP-79 및 PP-53 의 시행령이 유효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PP-93 은 최종분리과세 대상이 된 후 PI 양도로 인한 소득은 추가 소득세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므로 PMK-257 에 따른 BPT 요건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또한
- PMK-257 에 따르면 PI 의 간접이전에 대한 최종분리과세 소득세는 실제 이전가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해당 금액이 이전되는 블록의 공정가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PP-93 에는 PI 의 간접이전에 대한 최종분리과세 소득세 계산기준은 석유 및 가스블록(지분율 및 이전되는 PI 비율 고려)의 공정가액을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PP-93 은 PSC 의 공정가를 결정하기 위해 독립적인 제 3 자의 평가보고서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음.

PP-93 은 업스트림 석유 및 가스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PSC 계약자 및 PSC 에서 PI 를 이전하거나 취득하려는 잠재적 투자자는 PI 거래에 대한 PP-93 의 세금관련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PP-93 규정 및 파급효과가 귀하의 비즈니스에 영향이 있다면 Deloitte Touche Solutions 조세전문가에게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nergy, Resources and Industrials (ER&I) Partners

Questions concerning any of the subjects or issues contained in this **Tax Alert** should be directed to our Energy, Resources and Industrial (ER&I) tax specialists below:



**Cindy Sukiman**  
Partner, Indonesia ER&I Leader  
Business Tax and International Tax  
csukiman@deloitte.com



**Ali Mardi Djohardi**  
Partner, Indonesia ER&I Tax Leader  
Business Tax  
alimardi@deloitte.com



**John Lauwrenz**  
Partner  
Business Tax and M&A  
jlauwrenz@deloitte.com



**Turmanto**  
Partner  
Business Tax, Indirect Tax and  
Global Trade Advisory (Customs)  
tturmanto@deloitte.com

You may also get in touch with your usual contact in our firm, or any of the following Tax Partners:

**Business Tax**

**Melisa Himawan**  
**Tax & Legal Leader**  
mehimawan@deloitte.com

**Business Tax, Business Process Solutions and Gi3**

**Roy Sidharta Tedja**  
roytedja@deloitte.com

**Transfer Pricing**

**Roy David Kiantiong**  
rkiantiong@deloitte.com

**Business Tax**

**Dionisius Damijanto**  
ddamijanto@deloitte.com

**Business Tax and Tax Management Consulting**

**Yan Hardyana**  
yhardyana@deloitte.com

**Transfer Pricing**

**Balim**  
bbalim@deloitte.com

**Business Tax**

**Heru Supriyanto**  
hsupriyanto@deloitte.com

**Global Employer Services and Business Process Solutions**

**Irene Atmawijaya**  
iatmawijaya@deloitte.com

**Transfer Pricing**

**Sandra Suhenda**  
ssuhenda@deloitte.com

**Business Tax and Business Process Solutions**

**Ratna Lie**  
ratnalie@deloitte.com

**Global Employer Services**

**Sri Juliarti Hariani**  
shariani@deloitte.com

**Transfer Pricing**

**Shivaji Das**  
shivdas@deloitte.com

**Business Tax**

**Reggy Widodo**  
rwidodo@deloitte.com

**Deloitte Touche Solutions**

The Plaza Office Tower, 32nd Floor  
Jl. M.H. Thamrin Kav 28-30  
Jakarta 10350, Indonesia  
Tel: +62 21 5081 8000  
Fax: +62 21 2992 8303  
Email: iddttl@deloitte.com  
www.deloitte.com/id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Indonesia**

In Indonesia, services are provided by Deloitte Touche Solutions.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